

2027 제25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대비

2026년판 김진원 사회복지사1급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

보완자료

2027 시험대비 최신 변경사항 반영



정오사항



해설 보충



법령·제도 및
정책 변경사항

쌉맨™ 김진원 편저



오이코스북스
oikosbooks



김진원 OIKOS 사회복지사 1급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

머리말

사회복지학 정통파 전공교수가 기출의 본질을 꿰뚫어 집필한 독학 기출 해설의 **새로운 기준!**

“누군가 준비한 운명처럼 김진원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오이코스 스터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진원 교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합격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 제24회 합격 박람회 선생님 -

딱하고 정리~ 딱하고 합격~

썩맨™ 김진원 인사드립니다.

“좋은 기출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살아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정확하게 고쳐 공부하면 됩니다.”

기출문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학습자료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 제도는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출제 당시에는 옳았던 내용도 현재의 법령과 시험 기준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으로 2027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 2027 사회복지사1급 시험대비 보완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자료에는 기존 교재 출간 이후 변경된 법령·제도 및 시험에 필요한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기존 교재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처음부터 별도의 교재처럼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기본으로 학습하시되, 해당 부분을 공부할 때 이 보완자료의 변경사항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책 한 권을 선택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법령 개정 때문에 다시 책을 구입하거나, 무엇이 바뀌었는지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만든 책을 판매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시험일까지 책임 있게 보완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선생님들의 불필요한 학습 부담은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내용에 더욱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생명이시요 힘이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자료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앞날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10월

Oikonomos(청지기) · 썩맨™ 김진원

『2027 시험대비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 보완자료』 활용방법

기존 5개년 기출에 보완자료와 2026년 제24회 기출을 더하면 최근 6개년 기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 김진원 사회복지사1급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은 제19회(2021년)~제23회(2025년) 기출문제를 진도별·주제별로 재배열한 독학용 기출 해설서입니다.

2027년 제25회 시험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십시오.

STEP 01. 기존 5개년 기출 + 보완자료

『2026 김진원 사회복지사1급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

+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 2027 사회복지사1급 시험대비 보완자료

→ 제19회~제23회 기출을 진도별·주제별로 학습하면서, 변경된 법령·제도 및 주요 개정사항은 무료 보완자료로 2027 시험 기준에 맞게 보완합니다.

STEP 02. 제24회 최신 기출 추가

『2027 김진원 사회복지사1급 2026년 제24회 기출문제 심층해설서』

→ 제24회 최신 기출 200문제를 추가로 학습하여 최신 출제내용과 출제경향까지 보완합니다.

『2026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 제19회~제23회

+ 2027 시험대비 무료 보완자료

+ 제24회 최신 기출 200문제



제19회~제24회 최근 6개년 기출 완성!

“기존 기출은 그대로, 달라진 내용만 최신으로!”

2027년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 책과 최신 개정 추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출 학습

6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으로 기출을 충분히 반복 학습!

변경사항 보완

2027 최신개정 추록 eBook 무료 제공
법령 제도 개정, 정오사항 등 최신 내용만 빠르게 업데이트!

제24회는 선택

제24회 기출문제는 심층해설서 **필요한 분만**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은?

01 가성비로 준비한다면

기존 기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가 **10,000원**

필요한 핵심 기출을 부담 없이 공부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02 제24회까지 보완한다면

최신기출까지 한 번에, 더 든든하게!

정가 기준 **20,000원**

제24회 기출까지 학습하여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1. 28쪽 출제비중, 출제논점 표 3순위
발달^ㄹ 유사 용어 → 발달^과 유사 용어
2. 216쪽 01번 해설 정밀배합결과 예 [표]에서 오타
통짚단 → 통제집단
3. 268쪽 04번 해설에서 오타 및 내용추가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이다. →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다. 참
고로 1960년대는 통합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4. 335쪽 01번 보충설명에서 오타
~다른 기관^의로의 → ~다른 기관^{으로}로의
5. 491쪽 05번 해설 오타
㉠(1884년) → ㉠(1959년) → ㉠(1968년) → ㉠(1971년) → ㉠(1982년)
6. 564쪽 01번 보충설명 오타
① 사례관리는~ → ② 사례관리는~
7. 564쪽 02번 문제에서 오타
~지역사회조직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 ~지역조직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8. 661쪽 06번 문제 정답해설에서 오타 및 내용추가
㉠에서 ~현물급여(요양급여, 건강검진)와 현금급여(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가 있다. 참고로, 현금급여인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즉 상병수당 제도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 1일부터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상병수당 도입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다.
㉡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 720쪽 04번 보충설명 ㉡에서 오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 1995년부터 1999년 12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10. 831쪽 08번 보충설명 ㉢번에서 오타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1항에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항에서~
11. 929쪽 05번 오답풀이 ㉤번에 아래 문장을 추가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은 이 법에 따른 급여가 아니다. 또한, 복지 급여는 아동교육지원비이며, 아동교육비는 복지자금 대여(동법 제13조) 항목에 해당한다.



1. 89쪽 02번 오답풀이 ㉠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 추가
행동주의이론에서는 인간을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존재로 본다.
2. 100쪽 01번 보충설명 ㉢번에서 파란색 내용 추가
전인습적 수준의 1단계 복종과 처벌지향(복종과 처벌지향의 도덕성) 단계에서의 아동은 행동의~
3. 122쪽 09번 오답풀이 ㉠번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 추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시체계이다.
4. 153쪽 02번 보충설명 ㉤번 마지막에 아래 내용 추가
예를 들어 스트레스와 업무성과의 관계는 스트레스가 적당한 수준일 때 가장 높고, 너무 낮거나 높으면 성과가 감소하는 곡선 형태를 보일 수 있다.
5. 169쪽 05번 보충설명 ㉡ 마지막에 아래 내용 추가
범위는 등간척도와 비율척도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6. 219쪽 03번 오답풀이 ㉢번 마지막에 아래 내용 추가
사전 검사와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효과란 사전검사로 인해 연구대상자(피험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목적을 미리 인식하게 되어 처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가 과대평가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7. 239쪽 08번 해설에 아래 파란색 내용 추가
~기존 통계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다.
8. 378쪽 03번 오답풀이 ㉡번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
유머사용은 정서적 기법의 하나로서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오는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다. 인지행동모델의 개입기법은 ① 인지적 기법: 비합리적 사고 수정, ② 정서적 기법: 감정 완화 및 정서 변화, ③ 행동적 기법: 행동 변화 3가지로 분류된다. 유머사용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볍게 보게 하여 정서적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정서적 기법이다.
9. 592쪽 07번 오답풀이 ㉤번을 아래 파란색 내용으로 변경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입장은 공리주의에 해당한다. 공리주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근거로, 한 사람의 부가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효용은 감소하므로 고소득층의 부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면 사회 전체의 총효용이 증가한다고 본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재분배의 정당화 근거를 사회적 권리·평등·연대에서 찾는다. 즉, 단순히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정의가 핵심 논리이다.



10. 645쪽 03번 해설 ㉔ 마지막에 아래 내용 추가

집합적 선(collective good, 공동선)이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향유하는 복지적 가치나 사회적 이익을 의미한다. 공공보건, 의무교육, 주거안정, 사회서비스, 환경보호 등은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집합적 선에 해당한다. 현물급여는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는 데 유리한 반면, 현금급여는 개인의 효용 극대화와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별적 선을 추구하는 데 유리하다.

11. 786쪽 01번 오답풀이 ⑤번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공공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를 공감성의 한 요소로 확장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공감성의 본래 의미는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다.



1. 866쪽 01번 보충설명 마지막에 아래 법률 추가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 여성가족부이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 1) 852쪽 08번 해설 2번째 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2) 853쪽 09번 오답풀이 ②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3) 854쪽 11번 보충설명 ③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4) 926쪽 02번 문제선지 ③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5) 928쪽 04번 문제선지 ①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6) 928쪽 04번 문제선지 ③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7) 928쪽 04번 해설 5번째 줄에서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변경
- 8) 928쪽 04번 오답풀이 ①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9) 928쪽 04번 오답풀이 ③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10) 929쪽 05번 오답풀이 ①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11) 935쪽 01번 문제선지 ⑤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12) 935쪽 01번 보충설명 ⑤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13) 936쪽 01번 문제선지 ④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14) 936쪽 01번 해설 3번째 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15) 937쪽 01번 문제선지 ③번에서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변경
- 16) 937쪽 01번 보충설명 ④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3.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변경

- 1) 569쪽 02번 문제선지 ⑤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
- 2) 852쪽 08번 문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모두 변경
- 3) 852쪽 03번 문제선지 ②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
- 4) 902쪽 02번 문제선지 ①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

4.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변경

- 1) 857쪽 15번 문제선지 ④번에서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변경
- 2) 857쪽 15번 오답풀이 ④번에서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변경

5.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

- 916쪽 02번 문제선지 ④번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



• 22회

- ②

7. 680쪽 05번 문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파란색 부분 변경)

05 다음에서 ㉠, ㉡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22회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 | | |
|----------|----------|
| ① 30, 30 | ② 30, 40 |
| ③ 32, 30 | ④ 32, 40 |
| ⑤ 35, 40 | |

정답 및 해설

2026년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이는 2025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2026년에도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보충설명

2025년 7월 31일 개최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5년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25.8.1., 제정, 2026.1.1.시행)에 의해 생계급여의 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의 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정해졌다. 참고로 2027년 시험에 적용되는 법률개정 및 정책변경 사항은 시험 직전 1~2주 전에 프라임법학원에서 진행되는 “무료 끝장 법령특강”을 통해 반드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답 ④



8. 892쪽 02번 문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파란색 부분 변경)

02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회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④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정답 및 해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3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①),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신학겸임교사, 강사(②),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⑤),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③),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④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답 ④

9. 904쪽 04번 문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파란색 부분 변경)

04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9회

-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 ④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오답풀이

- ②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적용 제외)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제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3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이라도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되고,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면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한다(동법 제40조 제2항).
- ④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동법 제49조(대기기간)에서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⑤ 이주비는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 해당한다. 즉,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동법 제37조).

답 ①

MEMO

『5개년 진도별 기출문제집』
2027 사회복지사1급 시험대비 보완자료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편저자 김진원
발행인 김신은
발행자 오이코스북스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로, 대륭테크노타운20차 1924호
주문공급 010-7582-1259

저자와의
협약하에
인지생략

ISBN 979-11-24962-05-3(15330)

가격 0원

이 책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